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2. 3. 7. 개정 판 (시행 2022. 3. 7.) → 2022. 12. 19. 개정 판 (시행 2023. 1. 1.)

바뀜 1 · 신설 1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326/compare?from=1290&to=1404>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전 10:49:40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현장실습지원센터) <u>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01-01></u> 1.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2.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3.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4.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5.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6. 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조신설 2022.12.19.]
제8조(운영위원회)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산학협력센터장, 캠퍼스타운사업단장, 국제교육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가.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나. 진로설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다. 학생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라.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마.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사전 조사 심의 바.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승인 및 사후 평가(만족도 조사) 사. 사업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승인 아. 그 밖에 대학일자리본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0-02-24>	제8조(운영위원회)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산학협력센터장, 캠퍼스타운사업단장, 국제교육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가.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나. 진로설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다. 학생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라.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마.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사전 조사 심의 바.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승인 및 사후 평가(만족도 조사) 사. 사업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승인 아. 그 밖에 대학일자리본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0-02-24>

개정문 (참고본)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2.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3.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4.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5.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6. 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조신설 2022.12.19.]

제8조 중 "재무실장"을 "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